

보도자료

2014년 7월 9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
통신시장조사과 황지은 사무관 ☎2110-1554 jieunhwang@kcc.go.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 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 제·개정 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개정

2. 추진 경과

- '14.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
- '14.5.16 ~ 6.25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4.7.3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3. 고시 제·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상한액 범위를 고시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방통위가 결정하여 공고(안 제2조)

*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미적용

-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기간 단축 가능(안 제3조)

②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 (이통사 공시)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팻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안 제2조)
 - 이통사는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방통위 등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안 제4조)
- (대리점·판매점 게시)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공시 관련 정보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안 제5조)

③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 (긴급중지명령의 세부 적용대상) 방통위는 중지예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3조)
- (불복절차)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안 제5조)

④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 (과징금 산정 절차)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안 제2조)
 - (기준금액 산정)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안 제4조)
 - *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서의 영향 정도,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필수적 가중)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안 제7조)
 - (추가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안 제8조)

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추가

⑥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추가

4. 향후 일정(안)

- 행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 : '14년 7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4년 8월
- 위원회 의결 : '14년 9월